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새해 면역 많이 받으세요!

- 질병청, 설 명절 코로나19 백신 집중접종기간 운영(1.26.~2.8.)
- 명절 전 코로나19 감염·중증 방지를 위한 백신접종 적극 독려
- 연휴 기간 손씻기, 환기 등 개인생활방역 준수 강조 및 해외여행 국민 대상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대규모 이동과 만남이 잦아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접종을 원하는 국민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오늘(1월 26일(금))부터 2월 8일(목)까지 2주간 백신 집중접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설 명절 비상방역체계가 가동(1.19.~2.18.)되고 있는 상황에서, 설 명절 기간 가족, 친지, 지인간 교류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코로나19 확산 및 감염 후 중증·사망을 방지하고자 집중접종기간을 설정하였다.

설 명절기간(2.9.~2.12.)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받으실 분들은 2월 1일부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현수막, 안내문 등을 전파하여 홍보하고 명절 전 많은 국민이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종 필요성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1월 3주차(1.14.~1.20.) 코로나19 신규 양성자는 5,383명으로, 12월 이후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생활 하수를 검사한 발생추이 분석 결과, 서울, 광주 등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고위험군은 코로나19 감염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급성호흡기 감염증 감시에서 코로나19 신규 입원환자가 지속 발생* 중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정부는 고위험군의 입원·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 주간 급성호흡기감염증 코로나19 입원현황: (1월1주) 810명 → (1월2주) 753명
→ (1월3주) 822명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검출률을 살펴보면, JN.1의 검출률은 39.4%로, 지난주 대비 15.2%p 증가하여 10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신규백신은 HK.3(접종 전후 중화항체가 13.5배 상승)와 JN.1(7.7배) 모두에 대해 효과가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적극 독려해 고위험군 보호에 앞장설 예정이다.

새해 면역 많이 받으세요

세뱃돈 준비보다 중요한 건

코로나19 백신 접종

효과성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23년 1월~7월(1~30주)간 **약 8,600명 이상의 사망을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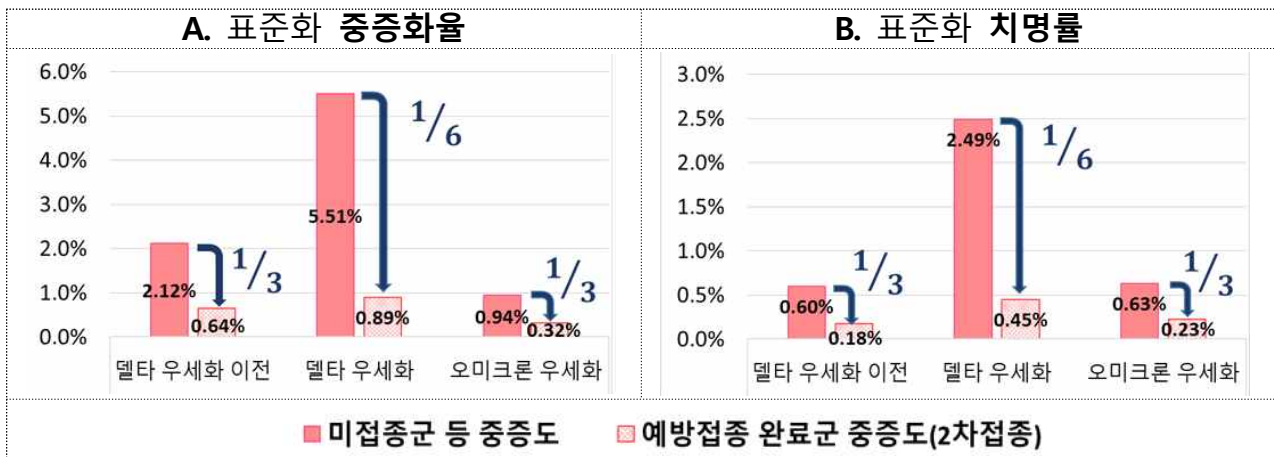
* 23.1월-23.7월 4주 동안의 확진자에 대한 사망 예방 규모(전수 감시가 시행된 23.8.31. 기준)

지금 유행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HK.3, JN.1)에도 **충분한 효과**

*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XBB.1.5 백신이 HK.3, EG.5 등 XBB 하위 계통에 효과적인 것이 입증된 점을 근거로 하여 XBB.1.5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국내 연구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을 2차접종 한 집단의 중증화율이 델타 우세화 시기, 오미크론 우세화 시기에 각각 미접종 집단 대비 1/6, 1/3 수준으로 나타나, 백신접종이 중증진행을 확연히 낮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전하며,

[그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우세화 시기별 미접종군 등의 중증도와 백신접종군의 중증도]



“이동량이 많고 집단활동이 활발한 설 명절 기간 동안 고위험군의 감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아직 접종하지 않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지금 백신접종에 참여하여 충분한 면역을 갖추고 건강한 설 명절을 맞이하길 적극 당부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과 더불어 일상생활에서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1일 3회 이상 10분씩 충분히 환기를 하고,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불필요한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한다. 또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외출 및 친족 모임을 자제하고 격리(5일)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질병관리청은 설 연휴 기간 해외를 여행하는 국민들이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여행 준비단계부터 여행단계, 귀국단계까지 해외여행의 전과정에 걸쳐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다음과 같이 당부하였다.

① 해외여행 준비단계에서는 여행 국가에 발생한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여 필요시 예방접종 등 위험요인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② 여행 중 외출 후나 화장실 이용 후, 식사 전 손을 30초 이상 비누로 씻기,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하지 않도록 끓이거나 익혀 먹기, 야생동물과의 접촉 자제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수칙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였다.

③ 여행 후 입국 단계에서는 검역관리지역에서 들어올 경우 입국 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상태를 정확히 입력하고, 입국 중 이상증상이 느껴질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하여 사전에 대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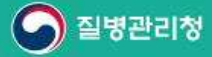
④ 검역대 통과 후 의심 증상 발생 시에는 해외감염병신고센터 또는 1339에 알리고, 증상이 계속될 경우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시 해외여행 여부를 알릴 것을 당부했다.

*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수칙 등’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www.kdca.go.kr>) 또는 해외감염병NOW(<http://해외감염병now.kr>)에서 확인 가능

- <붙임> 1. 설명절 맞이 코로나19 백신접종 안내문
 2. 설명절 맞이 코로나19 백신접종 포스터
 3. 2024년도 상반기 검역관리지역 안내문
 4. 해외감염병 예방수칙 포스터
 5. 감염병 보도 준칙

담당 부서 <총괄>	의료안전예방국 예방접종기획과	책임자	과 장	이형민 (043-913-2320)
		담당자	사무관	김유리 (043-913-2309)
담당 부서 <협조> (검역)	감염병위기대응국 검역정책과	책임자	과 장	신재귀 (043-719-9200)
		담당자	연구관	전형일 (043-719-9210)
			역학조사관	김승진 (043-719-9213)
담당 부서 <협조>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	책임자	과 장	김유미 (043-719-9050)
		담당자	사무관	김혜원 (043-719-9349)

2024.1.18.



새해 면역 많이 받으세요

세뱃돈 준비보다
중요한 건

코로나19
백신 접종

효과성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23년 1월~7월(1~30주)간 약 8,600명 이상의 사망을 예방

* 23.1월-23.7월 4주 동안의 확진자에 대한 사망 예방 규모(전수 감시가 시행된 23.8.31. 기준)

지금 유행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HK.3, JN.1)에도 충분한 효과

*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XBB.1.5 백신이 HK.3, EG.5 등 XBB 하위 계통에 효과적인 것이 입증된 점을 근거로 하여 XBB.1.5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백신 종류

· 유전자 재조합 백신
노바백스 XBB.1.5



· mRNA 백신
모더나 XBB.1.5
화이자 XBB.1.5

*mRNA 백신(모더나·화이자) 금기자 등 mRNA 백신 접종에 어려움이 있으셨다면 유전자 재조합 백신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접종 안내

- 권고 대상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입원·입소자)
- 접종 일정 2024.3.31.(일)까지
- 접종 안내 위탁의료기관(병·의원) 및 보건소
- 사전예약 없이 접종기관의 백신보유 여부 확인 후 당일에 바로 접종 가능
- 사전예약누리집에서 예약 후 접종도 가능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설 연휴 전 미리 접종하세요!





검역관리지역

2024년 1월 1일 기준

'검역관리지역'을 감시 기간 내 방문(체류 또는 경유)한 사람은 입국 시 반드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검역법 제12조 및 제3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분	국가	콜레라 (26)	폴리오 (24)	황열 (42)	페스트 (5)	중증호흡기 중후군 (13)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6)	뎅기열 (56)	치쿤구니아열 (22)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14)	홍역* (119)
아시아 · 중동 39 개 국	1	네팔									●
	2	대만					●	●			
	3	라오스						●			●
	4	레바논	●				●				●
	5	말레이시아						●	●		●
	6	몽골				●					
	7	몰디브									●
	8	미얀마									●
	9	바레인					●				●
	10	방글라데시	●					●			●
	11	베트남						●			●
	12	부탄									●
	13	사우디아라비아					●				●
	14	스리랑카						●			●
	15	시리아	●				●				●
	16	싱가포르						●			●
	17	아랍에미리트					●				●
	18	아르메니아									●
	19	아프가니스탄	●	●					●		●
	20	예멘	●	●			●				●
	21	오만					●				●
	22	요르단					●				●
	23	우즈베키스탄									●
	24	이라크	●				●				●
	25	이란					●				●
	26	이스라엘		●			●				●
	27	인도	●						●	●	●
	28	인도네시아		●							●
	29	일본									●
	30	중국				● ^a		● ^b	●		●
	31	카자흐스탄									●
	32	카타르					●				●
	33	캄보디아						●	●		●
	34	쿠웨이트					●				●
	35	키르기스스탄									●
	36	타지키스탄									●
	37	태국								●	●
	38	파키스탄	●	●							●
	39	필리핀	●						●	●	●

구분	국가	콜레라 (26)	폴리오 (24)	황열 (42)	페스트 (5)	중동호흡기 증후군 (13)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6)	뎅기열 (56)	치쿤구니아열 (22)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14)	홍역* (119)
아 프 리 카 51 개 국	1	가나		●							●
	2	가봉		●							●
	3	감비아			●						●
	4	기니		●	●						●
	5	기니비사우			●						●
	6	나미비아									●
	7	나이지리아	●	●	●						●
	8	남수단	●		●						●
	9	남아프리카공화국	●								●
	10	니제르		●	●						●
	11	라이베리아			●						●
	12	레소토									●
	13	르완다									●
	14	리비아									●
	15	마다가스카르		●		●					●
	16	말라위	●	●							●
	17	말리		●	●				●		●
	18	모로코									●
	19	모리셔스							●		
	20	모리타니			●						●
	21	모잠비크	●	●							●
	22	베냉		●	●						●
	23	보츠와나									●
	24	부룬디	●	●	●						●
	25	부르키나파소		●	●				●	●	●
	26	상투메프린시페							●		
	27	세네갈			●				●	●	●
	28	소말리아	●	●							●
	29	수단	●		●				●		●
	30	시에라리온			●						●
	31	알제리		●							●
	32	앙골라			●						●
	33	에리트레아									●
	34	에티오피아	●		●				●		●
	35	우간다			●						●
	36	이집트									●
	37	잠비아	●								●
	38	적도기니			●						●
	39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						●
	40	지부티									●
	41	짐바브웨	●								●
	42	차드		●	●				●		●
	43	카메룬	●	●	●						●
	44	카보베르데							●		●
	45	케냐	●	●	●						●
	46	코트디부아르		●	●						●
	47	콩고			●						●
	48	콩고민주공화국	●	●	●	●					●
	49	탄자니아	●	●							●
	50	토고			●				●		●
	51	튀니지									●

구분	국가	콜레라 (26)	폴리오 (24)	황열 (42)	페스트 (5)	중증호흡기 증후군 (13)	중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6)	덴기열 (56)	치쿤구니아열 (22)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14)	총역* (119)
아 메 리 카 · 오 세 아 니 아 39 개 국	1	가이아나		●							
	2	그레나다						●			
	3	과들루프						●			
	4	과테말라						●	●	●	
	5	뉴질랜드									●
	6	뉴칼레도니아						●			
	7	니카라과						●	●	●	
	8	도미니카공화국	●					●			
	9	마르티니크						●			
	10	멕시코						●	●	●	
	11	미국				● ^c		● ^d	●		●
	12	바베이도스						●			
	13	바하마						●			
	14	베네수엘라			●			●	●	●	
	15	볼리비아			●			●	●	●	
	16	벨리즈						●	●	●	
	17	브라질			●			●	●	●	
	18	수리남			●			●			
	19	생바르텔레미						●			
	20	세인트마틴						●			
	21	아르헨티나			●			●	●		
	22	아이티	●								
	23	온두라스						●	●	●	
	24	우루과이							●		
	25	에콰도르			●			●			
	26	엘살바도르						●	●	●	
	27	자메이카						●			
	28	캐나다									●
	29	코스타리카						●	●	●	
	30	콜롬비아			●			●	●	●	
	31	트리니다드 토바고			●			●			
	32	파나마			●			●	●	●	
	33	파라과이			●			●	●		
	34	파푸아뉴기니									●
	35	푸에르토리코						●		●	
	36	페루			●			●	●	●	
	37	피지									●
	38	프랑스령 기아나			●						
	39	호주						●			●
유 럽 27 개 국	1	네덜란드									●
	2	노르웨이									●
	3	덴마크									●
	4	독일									●
	5	러시아									●
	6	루마니아									●
	7	리투아니아									●

구분	국가	콜레라 (26)	폴리오 (24)	황열 (42)	페스트 (5)	중동호흡기 증후군 (13)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6)	덴기열 (56)	치쿤구니아열 (22)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14)	홍역* (119)
유럽 27 개 국	8 벨기에										●
	9 벨라루스										●
	10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11 세르비아										●
	12 스웨덴										●
	13 스위스										●
	14 스페인							●			●
	15 슬로바키아										●
	16 아일랜드										●
	17 아제르바이젠										●
	18 알바니아										●
	19 에스토니아										●
	20 영국							●			●
	21 오스트리아										●
	22 우크라이나										●
	23 이탈리아								●		●
	24 조지아										●
	25 튀르키예(터키)										●
	26 폴란드										●
	27 프랑스								●		●

* 해당 검역관리지역 입국자는 발열, 발진 등 홍역 의심증상 있을 경우에 검역관에게 신고(유증상 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a 내몽골자치구 / b 광둥성, 후난성, 쓰촨성, 광시성, 안휘성, 장시성, 충칭시 / c 콜로라도주 / d 미시간주

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
**해외감염병
 NOW**
 www.해외감염병NOW.kr





+ + 해외여행 떠나기 전에 확인했나요?

해외감염병 예방수칙

Check!

안전한 해외여행!

뭐부터 준비하지?

검역관리지역 방문 후, 입국 할 때?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검역관에게 제출해주세요!



귀가 후, 감염병 증상이 의심된다면?

질병관리청 1339로
전화하세요!



질병관리청 콜센터

해외여행 떠나기 전

Check!



해외감염병NOW에서
여행자 건강정보 확인하기



해외여행 전,
예방접종·예방약·예방용품 챙기기

해외여행 중에도

Check!



음식은 반드시 익혀먹고
생수나 끓인 물 마시기



야외활동 시에는 모기피제를 사용하고
긴팔·긴바지·모자 착용하기



아생동물 접촉 최대한 피하기
(동물에 물려지지, 낚시·낚시줄 채취 등 해양생물 신중 하기)

해외여행 다녀와서

Check!



입국 시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 제출하기



감염병 증상 발생 시
1339 질병관리청에 상담하기
(※ 상담을 위해, 최근 방문한 국가를 반드시 알려주세요)

해외감염병 정보의 모든 것은? 해외감염병NOW!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사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의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땀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